

1. 개정이유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기준에서는 비행기 종류에 대하여 한정하는 항공정비사 자격증명을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 전문교육기관의 관련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2년 이상의 정비실무경력을 갖추도록 정하고 있으나, 현행 항공안전법 시행규칙상에는 전문교육기관의 관련 과정을 이수한 사람과 대학·전문대학(다른 법령에서 이와 동등한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교육기관을 포함한다) 또는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학습하는 곳에서 관련 과목을 모두 이수한 사람에게 정비실무경력 요건을 완화하여 적용하고 있으며, 완화된 내용을 보완하기 위하여 자격 취득 후 일정 기간 이상의 실무경력을 갖추 때까지는 최대이륙중량 5,700킬로그램 이하의 비행기(헬리콥터의 경우 3,175킬로그램 이하)로 업무범위를 제한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어, 국제기준에 일부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음.

이에 따라 우리나라 항공정비사 자격증명 발급요건 중 정비실무경력 기준을 보장하고 연계된 절차 등을 개선하여 국제기준 등과의 정합성을 확보하여 항공안전을 강화하고, 국제사회 신인도를 개선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정비사자격증명을 받으려는 사람이 경력 요건을 충족하기 전이라도 학과 및 실기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요건 완화(안 75조 및 제76조)

- 나. 자격증 취득후 일정 경력요건을 갖추 때까지 항공기 중량별로 권한을 제한하던 규정은 폐지(안 제81조)
- 다. 자격증명 시험 및 한정심사의 학과 및 실기시험에 모두 합격하여 신청하는 경우, 합격확인서를 발급하는 근거를 신설하고 확인서 유효기간은 5년으로 설정(안 제83조 및 제85조의2)
- 라. 전문교육기관 이수자는 교육과정 이수후 2년의 실무경력, 대학등에서 관련 과목을 이수한 자는 과정 이수후 3년의 실무경력을 구비한 경우 자격증명을 발급하도록 개정(안 별표4)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생략
-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 다. 합의 : 해당기관 없음
- 라. 기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5. 12. 00. ~ 2026. 2. 00.)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5조의 제목 “응시자격”을 “발급요건”으로 하고, “별표 4에 따른 경력을 가진 사람이어야”를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로 하며, 제1호에서 제3호까지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82조에 따른 학과시험 및 실기시험에 합격한 사람
2. 별표 4에 따른 경력을 가진 사람
3. 법 제40조에 따른 항공신체검사증명을 받은 사람(법 제35조제1호부터 제7호 및 제7호의2까지의 자격증명을 받으려는 사람만 해당한다)

제76조제1호 중 “자격증명시험 또는 한정심사에 응시할 수 있는 별표 4에”를 “별표 4에”로 하고,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별표 4 제1호제가목 중 나) 또는 가)에서 정하고 있는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은 해당 교육과정의 이수증)

제81조제5항제1호 각목의 단서를 각각 삭제한다.

제83조제제1항에 단서를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자격증명시험 또는 한정심사의 학과시험 및 실기시험에 모두 합격한 사람이 신청하는 경우 별지 제36호의3서식의 합격확인서를 발급한다.

제8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5조의2(합격확인서의 유효기간) 제83조제1항 후단에 따라 발급된 합격확인서는 실기시험 합격일로부터 5년간 유효하다. 이 경우 유효기간을 산입할 때 「병역법」 제18조에 따라 현역병으로 복무한 기간은 제외한다. 제87조 본문 중 “자격증명시험 또는 한정심사의 학과시험 및 실시시험의 전 과목을 합격한 사람이”를 “제75조에 따른 발급요건을 모두 충족한 사람이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로 하고, 단서를 “다만, 제76조에 따라 응시원서에 첨부하여 이미 제출된 증명서류에 변경이 없는 경우에는 제출한 것으로 본다.”로 한다.

별표 4의 제목 중 “응시경력”을 “경력요건”으로 하고, 제1호가목의 “자격증명시험”을 “자격증명”으로 하며, 항공정비사란 중 1)나) 중 “6개월 이상이거나 교육과정 이수 전의 정비실무경력이 1년 이상인 사람”을 “3년 이상인 사람.(다만, 교육과정 이수 전에 행한 정비실무경력은 1/2만큼 인정한다.)”으로 하고, 같은 란 1)다) 중 “과정을 이수한 사람(외국의 전문교육기관으로서 그 외국정부가 인정한 전문교육기관에서 해당 항공기 종류에 필요한 과정을 이수한 사람을 포함한다).”을 “과정(외국의 전문교육기관으로서 그 외국정부가 인정한 전문교육기관에서 해당 항공기 종류에 필요한 과정을 포함한다)을 이수한 이후의 정비실무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다만, 교육과정 이수 전에 행한 정비실무경력은 1/2만큼 인정한다.)”으로 하며, 제1호나목 및 제2호나목의 “한정심사”를 “자격증명의 한정”으로 하고, 제1호나목 및 제2호나목의 표제를 다음과 같이 한다.

구분	자격별	비행경력 또는 그 밖의 경력
----	-----	-----------------

별표 47의 1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5. 법 제38조제5항에 따라 다음 각 목의 증명서, 확인서를 발급받으려는 자 가. 자격증명서 나. 시험(심사) 합격확인서 다. 자격증명 및 자격증명 한정의 유효성 확인 증명서	1만원
--	-----

별지 제36호의2서식 및 제36호의3서식을 별지와 같이 각각 신설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6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항공정비사 자격증명시험 응시자격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일 당시 종전의 이 규칙 제104조에 따라 지정을 받은 전문교육기관에서 교육훈련 과정에 입과하였거나 이수한 사람이나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전문대학(다른 법령에서 이와 동등한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교육기관을 포함한다) 또는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학습하는 곳에 입학하여(이 경우, 입과 시점은 해당 교육기관의 신입생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한다.) 이 규칙 별표 5 제1호에 따른 항공정비사 학과시험의 범위를 포함하는 각 과목을 이수하고 있거나 이수한 사람에 대해서는 이 규칙 별표 4 제1호가목의 개정 규정

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시험(심사) 합격확인서 (재)발급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아니하며,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5일	
신청사유		[] 신규 [] 분실 [] 훼손			
성명	한글		연락처	자택	
	영문			휴대폰	
				E-mail	
주민등록번호		※외국인은 생년월일과 여권번호 기입			
주소	한글				
	영문				
성별	[] 남 [] 여		국적		
시험(심사)	학과시험				
합격일	실기시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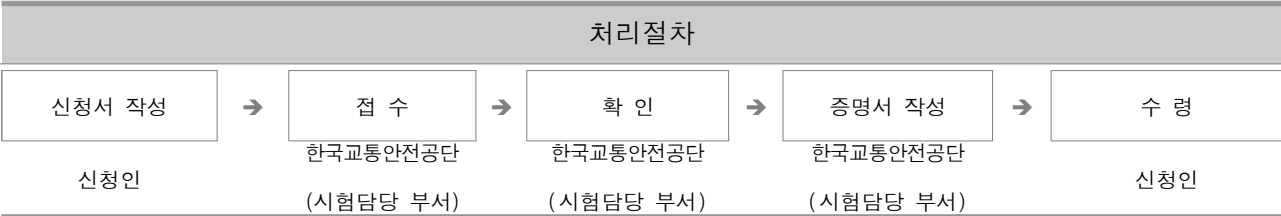
「항공안전법」 제3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시험(심사) 합격 확인서 (재)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한국교통안전공단이사장 귀하

첨부서류	없 음	수수료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 321조에서 정한 수수료
------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발급번호(No.) :

시험(심사) 합격확인서

I. 성명 (NAME) :

II. 생년월일 (DATE OF BIRTH) :

III. 국적 (NATIONALITY) :

IV. 합격일 (DATE OF ACCEPTANCE) :

V. 유효기간 (EXPIRY DATE) :

VI. 응시 분야 (FIELD OF EXAMINATION) :

위 사람은 항공안전법 제3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3조제1항에 따라 학과 및 실기시험에 모두 합격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한국교통안전공단이사장

직인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75조(<u>응시자격</u>)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항공종사자 자격증명(이하 “ <u>자격증명</u> ”이라 한다) 또는 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자격증명의 한정을 받으려는 사람은 법 제34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사람으로서 <u>별표 4에 따른 경력을 가진 사람이어야 한다.</u>	제75조(<u>발급요건</u>) ----- ----- ----- ----- ----- -----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u><신 설></u>	1. 제82조에 따른 학과시험 및 실기시험에 합격한 사람
<u><신 설></u>	2. 별표 4에 따른 경력을 가진 사람
<u><신 설></u>	3. 법 제40조에 따른 항공신체검사증명을 받은 사람(법 제35조 제1호부터 제7호 및 제7호의2까지의 <u>자격증명</u> 을 받으려는 사람만 해당한다)
제76조(응시원서의 제출) 법 제38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자격증명의 시험 및 심사(이하 “ <u>자격증명시험</u> ”이라 한다) 또는 법 제38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자격증명 한정의 심사(이하 “ <u>한</u>	제76조(응시원서의 제출) (현행과 같음)

정심사”라 한다)에 응시하려는 자는 별지 제35호서식의 항공종사자 자격증명시험(한정심사) 응시원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교통안전공단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교통안전공단(이하 “한국교통안전공단”이라 한다)의 이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문항공교통관제사 외의 자격증명 또는 자격증명의 한정을 받으려는 사람은 제1호 및 제3호의 서류는 실기시험 응시원서 접수 시까지 제출할 수 있다.

1. 자격증명시험 또는 한정심사에 응시할 수 있는 별표 4에 따른 경력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2. 제88조 또는 제89조에 따라 자격증명시험 또는 한정심사의 일부 또는 전부를 면제받으려는 사람은 면제받을 수 있는 자격 또는 경력 등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1. 별표 4에 -----

(별표 4 제1호제가목 중 나) 또는 다)에서 정하고 있는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은 해당 교육과정의 이수증)

(현행과 같음)

3. 제101조제2항에 따른 항공기 조종연습허가서 또는 제102조 제3항에 따른 항공교통관제연습 허가서(자격증명을 받지 않은 사람으로서 해당 실기시험에 필요한 사람만 해당한다)

제81조(자격증명의 한정)⑤ 국토교통부장관이 법 제37조제1항 제2호에 따라 한정하는 항공정비사 자격증명의 항공기·경량항공기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항공기의 종류

가. 비행기 분야. 다만, 비행기에 대한 정비업무경력이 4년(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 전문교육기관에서 비행기 정비에 필요한 과정을 이수한 사람은 2년) 미만인 사람은 최대이륙중량 5,700킬로그램 이하의 비행기로 제한한다.

나. 헬리콥터 분야. 다만, 헬리콥터 정비업무경력이 4년(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 전문교육기관에서 헬리콥터 정비에 필요한 과

(현행과 같음)

제81조(자격증명의 한정)⑤ (현행과 같음)

1. 항공기의 종류

가. -----.(단서 삭제)

나. -----.(단서 삭제)

정을 이수한 사람은 2년) 미만인 사람은 최대이륙중량 3,175킬로그램 이하의 헬리콥터로 제한한다.

제83조(시험 및 심사 결과의 통보 등) ① 한국교통안전공단의 이사장은 자격증명시험 또는 한정심사의 학과시험 및 실기시험을 실시한 경우에는 각각 합격 여부 등 그 결과를 해당 시험에 응시한 사람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한국교통안전공단의 이사장은 자격증명시험 또는 한정심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항공종사자 자격증명별로 학과시험 및 실기시험 합격자 현황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신 설>

제83조(시험 및 심사 결과의 통보 등) ① -----

-----. 다만, 자격증명시

험 또는 한정심사의 학과시험 및

실기시험에 모두 합격한 사람이

신청하는 경우 별지 제36호의3서

식의 합격확인서를 발급한다.

(현행과 같음)

제85조의2(합격확인서의 유효기

제87조(항공종사자 자격증명서의 발급 및 재발급 등) ① 한국교통안전공단의 이사장은 자격증명시험 또는 한정심사의 학과시험 및 실기시험의 전 과목을 합격한 사람이 별지 제37호서식의 자격증명서 (재)발급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제출한 경우 별지 제38호서식의 항공종사자 자격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35조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자격증명의 경우에는 법 제40조에 따른 항공신체검사증명서를 제출받아 이를 확인한 후 자격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②~⑦ (생략)

간) 제83조제1항 후단에 따라 발급된 합격확인서는 실기시험 합격일로부터 5년간 유효하다. 이 경우 유효기간을 산입할 때 「병역법」 제18조에 따라 현역병으로 복무한 기간은 제외한다.

제87조(항공종사자 자격증명서의 발급 및 재발급 등) ① -----
----- 제75조에 따른 발급요건을 모두 충족한 사람이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

다만, 제76조에 따라 응시원서에 첨부하여 이미 제출된 증명서류에 변경이 없는 경우에는 제출한 것으로 본다.

②~⑦ (현행과 같음)